

소방교 승진 「소방법령 I」(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험실시에 관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5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 내용변경시 7일전까지 공고

② 소방사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소방장 및 소방교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소방사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u>기본적인</u>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④ 필기시험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3배수

2.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다.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보권자가 같은 기관 내의 전보인 경우

②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인 경우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④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3.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 ②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③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④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4.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1개월

- ②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 ③ 소방공무원이 2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6월

- ④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1개월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의 가점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한다.

- ②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 ③ 소방경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0.3점을 받는다.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비 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④ 소방위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가점을 받지 못한다.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 이하에 한함.

6.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 선순위자 결정순서로 옳은 것은?

- ㄱ.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ㄷ.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ㄹ.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ㄷ - ㄱ - ㄴ

7.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피고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임용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 을 피고로 한다.”

-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 소방본부장 ④ 소방청장

-> 다만,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 범위

- 대통령의 위임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
- 소방청장의 위임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8.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20일 전
 ②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소방청장은 그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2. 승진시험 :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③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소속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9.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 | |
|---|
|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u>8년 이상</u> 근속자 |
|---|

②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7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 5일 전

③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2년간

④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국정과제 등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등)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 | |
|--|
|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註: 인사혁신처장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실시)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 1년 |
|--|

10.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의 계급정년을 모두 합한 숫자로 옳은 것은?

① 30 ② 33 ③ 35 ④ 37

• 소방감: 4년 • 소방준감: 6년 • 소방정: 11년 • 소방령: 14년

11. 「공무원보수규정」상 보수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지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2. 징계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면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② 해임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③ 강등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직무중사 금지

④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함

-> 3개월. 보수 전액

13.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직장훈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교육

②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③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④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 훈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26조).

- | |
|--|
|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

14.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②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시보임용 면제>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이하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할 미만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

15.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히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을 최대 3년(파견 연장 기간 포함)을 파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②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④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사유	파견기간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특히 필요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1년 이내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히 필요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이영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1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임용권자는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승진임용할 수 없다.

- ㉠ ㉡ ㉠ ㉡
- ① 12 6 ② 12 12
- ③ 18 3 ④ 18 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 제1항 제4호(註: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호(註: 순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註: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공급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1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정점 33점 이상~45점 미만은 근무성적 “양”에 해당한다.

(수) 55점 이상 ~ 60점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가) 33점 미만

②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만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근평의 예외>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1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명문상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 ②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③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④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조정사유>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5.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삭제>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

19. 「소방공무원기장령」상 소방공무원 기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20.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의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외
- ④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 휴무일에 소방공무원이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본문).
2. 다만,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③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④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2.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으로 한다.
• 소방감: 4년 • 소방준감: 6년 • 소방정: 11년 • 소방령: 14년
- ②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2년..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 |
|---|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

④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2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대우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소방장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 |
|---|
| 1. 소방정 및 소방령 : 7년 이상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 5년 이상 |
|---|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계속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24.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❸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④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일반적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❹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위 승진 「소방법령Ⅳ」(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과정에 연계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평정 시 1개 과정을 7시간으로 평정할 수 있다.
 -> 전문교육 중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의 신입교육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2년이다.
 -> 1년
- ③ 소방위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위험물 전문교육과정은 지방소방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2주 이상이다.
- ④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령·소방경은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1주 이상 지휘역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입 교육 과정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	1년	중앙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소방사 등 신규채용시험합격자 또는 미교육 신규임용자	12주 이상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지휘 역량 교육 과정	소방정책 관리자과정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정 (소방정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6개월 이내	중앙소방학교
	소방령·소방경 지휘역량 교육과정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령·소방경	2주 이상	
전문 교육 과정	소방법령		소방공무원	1주 이상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전술		소방위 이하		
	전문 능력 향상	소방설비(기계)	소방위 이하	1주 이상	
		소방설비(전기)	〃		
		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	〃		

		소방안전교육사	〃	2주 이상	
		응급구조사	〃	8주 이상	
		화재조사	소방경 이하	10주 이상	
	기타 교육훈련기관별로 개설한 전문교육과정	소방공무원		3일 이상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경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방위에서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 : 4년	2. 소방령 : 3년	3. 소방경 : 3년	4. 소방위 : 2년
5. 소방장 : 2년	6. 소방교 : 1년	7. 소방사 : 1년	

② 시험승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이다.

1. 시험승진 :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일

③ 심사승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이다.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

2.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 + 전직시험

②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1회 줄 수 있다.

->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본문).

2.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4. 「소방공무원기장령」상 소방공무원의 기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한다.

<수여시기>

소방지휘관장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
소방기념장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③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제5조 제1항).

④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1.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4항).

2. 승진대상자명부는 영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

② 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u>소방위 이하</u>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한다.

->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④ 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u>소방위 이하</u>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체력검정성적>

가. 소방령 및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대우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우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이 상실되므로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는 못한다.
- ③ 소방위인 소방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해야 하며, 소방위 계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근무실적이 우수

- | |
|-------------------------------------|
| 1. 소방정 및 소방령 : 7년 이상 |
|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 5년 이상 |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에 발령하여야 한다.

7.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에 관한 권한
- ②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 ③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④ 시·도 소속 소방준감인 소방본부장에 대한 전보에 관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시·도지사
---	-------

8.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❶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❷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하였다면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 ❸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재직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 ❹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 ❺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제2항).
- ❻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 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註: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 ❽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9.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❶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다.

소방공무원법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 범위

- 1. 대통령의 위임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
- 2. 소방청장의 위임
 -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③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제76조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④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분의1

10. 「소방공무원임용령」상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 :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승진시험 요구중인 소방공무원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제5항).

(3)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1.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11.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령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의전 및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 /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시도가 부담

②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은 소방공무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❸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집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청장 :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 시도지사: 집행계획

④ 소방청장은 10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청장 :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이다.

❸ 국립소방연구원,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④ 소방청에 설치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u>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u>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
3.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따라 <u>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u>

	[임용령 제3조 제1항] 대통령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임용령 제5항 제1호] 소방청장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임용령 제5항 제3호] 소방청장이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4. <u>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u>	소속 소방공무원의 <u>소방경 이하 계급으로</u> 의 승진심사
5. <u>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u>	소속 소방공무원의 <u>소방령 이하 계급으로</u> 의 승진심사

소방위 승진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❶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②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되는 것이다.
- ③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④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부관'일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이는 본래 의미의 행정처분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 ③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
-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에 의미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그로써 곧바로 당해 처분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②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③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
- ④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5.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것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④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되므로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6.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 및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포함한다.
- ③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

④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7.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 甲은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② 운전기사 乙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乙이 소속된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乙은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행정청이 공무원 丙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丙은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丁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丁은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9.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0.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게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명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하천유수인용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②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청구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는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④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 측의 고용 해제 통보 후 국방부 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룰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公示)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 ④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4. 법규명령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법률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본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②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③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 ④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 ②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

다.

1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❶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구술로 고지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우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7.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❶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 ❷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❸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❹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❶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 ❷ 현행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은 무효이다.

19.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ㄹ.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0.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지닌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
- 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1.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확약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컴퓨터에서 신청서를 발송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이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청문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이 청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㉓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3.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법, 출입국사법, 교통사법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②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③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금액을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과별절차가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4.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는 없어도 된다.

②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㉓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5. 판례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ㄱ.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상상의 별점의 배점 |
| ㄴ.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결정 |
|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 ㄹ.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

① ㄱ

㉒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